

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5. 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신설
- 호당, 연도당 300원

3. 참고사항

-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(건설교통부령 제425호, 2005. 2. 12)
- 경북도 재정과-3196(2005. 2. 23)

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”로 한다.

“별표1의 제7호에 (2)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”

(2) 개별(공동)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	1호 1년도당	300	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

제3조제1항중 “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”를 “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”로 하고, 제6조제1항제1호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하며, 동조제2항중 “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”로 하고, 별표1의 제4호제7목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개정이유
【별표1】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(단위 : 원)				【별표1】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(단위 : 원)				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 개정 에 따른 수수료 신설
구 분	기준	요율	비고	구 분	기준	요율	비고	
<증명> 1.~6. (생략) 7. 주택에 관한 증명 (1)공(시)영주택 분양 금 납부증명 <신설> 8. (생략)	1건	300		<증명> 1.~6. (현행과 같음) 7. (1)..... (2)개별(공동)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8. (현행과 같음)		... 1호 1년도당	... 300	

관련법령 발췌

○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3조(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)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·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(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)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·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(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.